

부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12월 8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4년 12월 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6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004. 12. 15) 상정
- 제116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004. 12. 15)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최 중 화)

가. 제안이유

- 2004년 10월 부천시 조직개편에 따라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의 구청 이관으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의 구 위임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의 구 사무위임에 따라 구에도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제1항)
-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시·구에 과년도 미수액 징수대장 및 숨은 세원 발굴 과징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 지급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시·구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함.

(안 제8조의3 신설)

-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해당없음	○ 해당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24호
의결 년월일	2004.12.23 (제116회)

제출년월일 : 2004.12. 8.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2004년 10월 부천시 조직개편에 따라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의 구 청이관으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의 구 위임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의 구 사무위임에 따라 구에도 세입징수공 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제1항)
-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시·구에 과년도 미수액 징수대장 및 숨은 세원 발굴 과징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 지급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시·구 위원회 의 심사결정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부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부천시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시·구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세입업무담당국장이 되고”를 “시는 세입업무담당국장이 되고, 구는 구청장이 되며”로, “시장”을 “시장(구는 구청장)”으로 하며,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구 5급이상 공무원

제8조제1항중 “시장”을 “시장(구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대장비치) 시 및 구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미수액징수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과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포상금 지급신청) ①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구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첨부하여 시장(구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등) 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부천시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생략)</p> <p>③위원회의 위원장은 <u>세입업무담당국장이 되고</u>,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u>시장</u>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거나 경력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p> <p>2. (생략)</p> <p>④·⑤(생략)</p> <p>제8조(포상금 지급) ①<u>시장</u>은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해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해에 지급할 수 있다.</p> <p>②(생략)</p> <p><신설></p>	<p>제7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등) ①----- -----<u>시·구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u>----- -----</p> <p>②(현행과 같음)</p> <p>③---<u>시는 세입업무담당국장이 되고, 구는 구청장이 되며,</u>----- ----- -----<u>시장(구는 구청장)</u>----- -----</p> <p>1. <u>시·구 5급이상 공무원</u></p> <p>2. (현행과 같음)</p> <p>④·⑤(현행과 같음)</p> <p>제8조(포상금 지급) ①<u>시장(구는 구청장)</u>----- ----- -----</p> <p>②(현행과 같음)</p> <p>제8조의2(대장비치) <u>시 및 구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미수액징수대장 및 별지 제2호서</u></p>

현행	개정안
<p data-bbox="236 533 421 573"><신설></p>	<p data-bbox="836 331 1399 510">식의 숨은세원발굴과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p> <p data-bbox="802 533 1399 907">제8조의3(포상금 지급신청) ①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구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첨부하여 시장(구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 data-bbox="836 929 1399 1108">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p>
<p data-bbox="236 1137 421 1178"><신설></p>	<p data-bbox="802 1137 1399 1444">제9조의 2(위원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별지 제1호서식]

과년도 미수액 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징수 월일	징수자		징수내역					체납자		확인자		비고
	직급	성명	구분	년도 납기	과세 번호	납부 일	징수 액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호)	직 위	성 명	

※ “구분” 란에는 과년도 체납세 경과연수를 표시하고, “비고” 란은 포상금청구 (지급)액, 지급일 등을 기재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2호서식]

숨은 세원 발굴 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상)

납기	부과자(제보자)		발굴세원		납세 의무자		징수 일자	확 인 자		비고
	직 급 (주소)	성 명 (주민등록 번호)	구 분	과 목 (세목)	주 소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직 위	성 명	

※ “구분” 란에는 미등기, 탈루·은닉세원, 무단점용, 세외수입증대 등을 표시하고, “비고” 란은 포상금액, 지급일 등을 기재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3호서식]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수 신 : 부천시장(○○구청장)

발 신 :

참 조 : ○○과장

구 분	건 수	징 수 액			포상금	비 고
		합 계	본 세	가산금		
계						
과 년 도 체 납 액 징 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경과					
숨 은 세 원 발 굴	미 등 기					
	탈루·은닉 세원					
	무단점용					
	세외수입증 대					

첨 부 1. 과년도 미수액 징수내역 1부

2. 숨은 세원 발굴 내역서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3호서식(2))

과년도 미수액 징수내역								
징 수 자			징 수 액			건 수	포상금 청구액	거래은행 계좌번호
소 속	직 급	성 명	합 계	본 세	가산금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